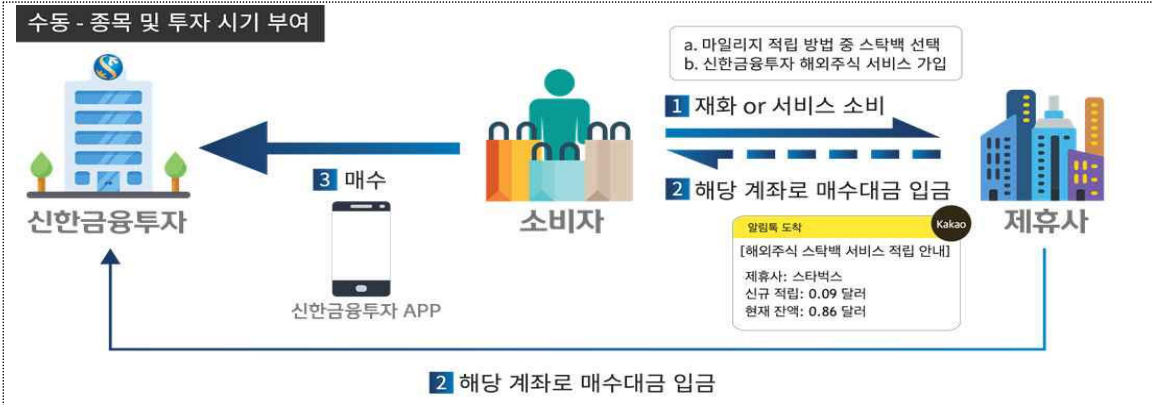


1

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(신한금융투자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신한금융투자	남기두 대리 (010-9242-3222)	손영채 과장	02-2100-2650	이정두 팀장	02-3145-7616
		나혜영 사무관	02-2100-2652	이준호 조사역	02-3145-7584

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신한금융투자 제휴업체의 마일리지, 캐쉬백, 포인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주식에 소액(소수 단위 포함)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



□ (특례내용) 자본시장법 제11조

-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
 -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(스탁백 서비스)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

□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신한금융투자는 제휴업체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청약의 유인 위탁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

□ (기대효과)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 및 소액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, 마일리지의 신속한 자산화를 통한 소멸 포인트 감소가 기대

□ (향후일정) '20년 10월 서비스 출시 예정